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0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강선우·김승원·양정숙

오영환 · 최혜영 · 허종식

이용빈 • 권칠승 • 이수진

서영석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응급 구조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u>수 없다.</u>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
	급구조사시험 응시를 제한할
	<u>수 있다.</u>